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9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노식래, 이영실,
김경영, 박기재, 박순규,
양민규, 오중석, 이동현,
임종국, 한기영, 홍성룡,
이성배, 김혜련, 이병도,
오현정, 김동식, 김용연,
김화숙, 봉양순, 이정인,
김소양 의원 (22명)

1. 제안이유

-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,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,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2019년 3월 설립된 ‘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’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‘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’을 추가함(안 제33조제1항제6호에 자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6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 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보건복지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아. (생 략)</p> <p>〈<u>신 설</u>〉</p> <p>7. ~ 10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자.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 서비스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